

공고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문서번호 : 인개택업 12 호

공고일자 : 2019년 2월 1일

게시판: 각 충전소

공고기한 : 2019년 2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

공 고 문

1.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만65세 이상 사업용 택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3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1037('17.12.29)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2. 그러나 연합회에서는 의료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검사항목 및 비용 등에 강력히 건의한바 국토교통부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 할 계획입니다.

- 아 래 -

가. 의료적성검사는 업계의 개선 건의 요구가 많고 카풀 등 현안문제로 인해 3개월 ('19.5.13)이후 시행검토

- 국토부 고시 예고는 4월 중순경 예정.

나. 2월 13일부터 의료적성검사(안)이 확정시까지 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를 반드시 받아야 함.

다. 의료 적성검사(안)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업계 의견청취 계획.

라. 시행일 이후 생년월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을 받아야 하나 의료적성검사 연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.

1 검사 대상

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('18.2.12)개정】

- 대상 : 사업용 택시 65세이상 고령운전자
- 주기 : 65세 이상 매 3년, 70세 이상 매 1년(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)
- 시행일 : 2019년 2월 13일

* (경과조치)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20년 2월 12일까지 수검해야 함

2 수검 시기

최초 검사 (생년월일 기준)	○ 시행일 당시 대상자(1954.2.13 이전 출생자) -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서 65세(1954.2.13 이전 출생자) 이상인자 : 2020.2.12.까지 수검(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검) ○ 시행일 이후 입사자('19.2.13일부터 입사자, 1954.2.14. 이후 출생자) -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: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-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된 자 :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
계속 검사 (수검일 기준)	○ 65세 ~ 69세 :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-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,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-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,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○ 70세 이상 :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-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-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

3 검사 시행

검사구성	시야각 검사 등 7종
검사방법	검사에약→검사접수→검사시행→교정교육→판정표교부
검사판정	적합·부적합 판정(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) -불합격 판정 시 다음 시험을 응시할 때까지 택시운행 금지-
검사시간	약 2시간 내외
검사에약	홈페이지(www.kotsa.or.kr) 또는 콜센터(1577-0990) 예약 * 2019. 2. 1(금)부터 예약 가능
검사비용	20,000원(부가세포함)
검사장소	인천 남구 백범로 357(간석동 172-1) ☎ 032)579-5007

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